

# 피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 하향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

## I 검토배경

- 「공직선거법」 및 「정당법」 개정으로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,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로 각각 하향되었는바, '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'(2020. 1. 23.)에 부가하여 피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 하향에 따른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에 관한 정치관계법 운용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.

## II 관련 규정

-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,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이 있음(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·제3항).
- 16세 이상의 국민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음(정당법 제22조 제1항).
-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(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)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(공직선거법 제59조 제4호).

## III 운용기준

### 1 선거운동 관련

#### □ (예비)후보자 등록

- ⇒ (예비)후보자 등록 당시 18세에 달하지 아니하더라도 선거일 기준 18세 인 경우 (예비)후보자 등록이 가능함.

## □ 18세 미만인 학생의 선거운동

⇒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학생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. 다만, 선거일 기준 18세로 피선거권이 인정되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(공직선거법 제60조의3) 또는 상시 허용되는 방법(공직선거법 제59조)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.

## □ 말로 하는 선거운동

⇒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학생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, 교실 마이크나 학교방송 등 확성장치를 이용하거나 학교 운동장 등에서 이루어지는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(공직선거법 제59조 제4호).

## 2] 정당활동 관련

### □ 정당 가입 및 당직 취임

⇒ 정당에 입당하는 때에 16세 이상인 학생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고, 당직에 취임할 수 있음.

### □ 정치자금 기부

⇒ 16세 학생이 정당의 당원이 되어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가능함.

### □ 후원금 기부의 고지·안내

⇒ 16세 학생이 「공직선거법」에 위반되지 않은 방법으로 후원금 기부의 고지·안내를 하는 것은 가능함. 다만, 후원금 모금과 기부를 매개·대행하는 경우에는 「정치자금법」 제2조, 제45조에 위반됨.

## □ 통상적인 정당활동

⇒ 정당의 당원인 학생은 선거기간이 아닌 때 정당의 계획과 경비 하에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·시설물·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거나 당원모집을 하는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있으나(정당법 제37조 제2항),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넘어 후보자의 지지·추천·반대에 이르는 등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도모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.

## □ 18세 미만인 학생의 경선운동

⇒ 18세 미만인 학생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, 당원이라 할지라도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. 다만,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경선운동을 할 수 있음(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).

## ③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의 한계

### □ 18세 미만인 학생의 행위능력(피선거권이 있는 경우)

⇒ (예비)후보자로 등록한 18세 이상 19세 미만 학생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「공직선거법」의 공법상 행위를 할 수 있음.

⇒ 다만, 「민법」상 미성년자로서 선거운동용 차량·장비·물품의 구입·임차 등 사법상 계약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i)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거나, ii) 범위를 정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처분의 허락을 받거나, iii) 성년인 회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임.

### □ 18세 미만인 자의 정당가입

⇒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(정당법 제23조 제1항).

## □ 학교 관리자의 제한

⇒ 학교에서의 질서유지와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 관리자인 학교의 장이 교육 관계 법령 또는 내부 지침 등에 따라 학교 내 선거운동을 위한 출입을 제한·통제하거나 학교 시설의 이용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「공직선거법」에 위반되지 아니하는바(2020. 2. 18. 회신), 학교 내에서의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은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가능할 것임.

※ ‘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’(2020. 1. 23.) 중 이 운용기준에 반하는 부분은 이 운용기준에 의하여 변경된 것으로 봄.